

UR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이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택

A Study on the Effects of Cheju Agriculture by the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UR.

Kim, Kyung-Taeg

Summary

The paper has reviewed the major contents of the Agreement of Uruguay Round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lso it has calculated the amount of damage in Cheju Island, caused by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of between 1995 and 2001 by using the material publish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rom the result of market liberalization it was found that mandarine, beef, sweet potato, pork, and potato are most severely damaged crops. The amount of damage for mandarine is 79.5 billion won, and beef 46.4 billion won, sweet potato 46 billion won, pork 42 billion won, potato 40 billion won, and so forth. Total amount of damage due to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the Cheju farm household is 1,041 billion won. The amount of damage per farm houshold in Cheju Island is 2.5 million won which is the biggest amount of damage in the nation. In fact,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cheju agricultural industry is five times more than Kangwon province.

1. 서 론

제주도 지역경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1992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역총생산(GRP)은 23,370억원이며, 그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1%, 3차 산업이 66%, 그리고 2차 산업이 4.2%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역특성상 앞으로의 제주지역 경제성장 또한 2차 산업보

2 亞熱帶農業研究

다는 1차, 3차 산업 두 부문의 성장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의 많은 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농업소득이 제주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수입원이 됨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농업소득중에서 특히 감귤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로 이것이 제주지역총생산에서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감귤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비중의 수입원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 작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곧 다자간무역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7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타결되었다. 이제 세계무역질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구조에까지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 제주지역경제의 기반인 감귤등 15개 NTC 품목의 개방도 예정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개방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압력으로 생산위축과 탈농현상이 가속화되리라는 우려는 제주지역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개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액은 1995~2001 기간중 총 7조 9백3십8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피해액중 감귤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7천9백 49억 원으로, 비율로 따질때 전체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감귤은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고, 단일 품목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어떤 품목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 이렇게 볼때 제주지역의 감귤농

업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방으로 인하여 제주 농업이 입을 피해액을 예측함으로써 그 대처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제안된다.

2. UR農産物協商과 市場開放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GATT 체제하에서도 각국이 농업부문을 각종 예외 규정을 기본적으로 인정 받아 왔다. 이것은 농업부문이 고용, 국토보존,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NTC (Non Trade Concerns)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적자의 해소 방안으로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제외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UR에서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보장, 국내보조금의 감축, 수출보조금의 감축 등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이루어진 농산물 협정의 세가지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 UR 농산물협상타결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후, 농산물시장 개방의 파급 영향을 살펴 본다.

1. 협상타결 내용

1) 시장접근 (Market Access)의 내용

UR농산물협상 최종협정문에는 관세화물 전제로 기준년도(1986~88)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를 설정하고, 향후 10년(1995~2004)간 24%를 감축(최저 감축 폭은 10%)함과 동시에 기준년도 동안의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품목의

경우는 기준기간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인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을 보장하고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은 초기년도에 국내 소비의 3%에서 최종년도의 5%까지 확대되도록 되어 있다(<표1> 참조).

<표 1> 시장접근의 보장

구 분	기 준	이 행 기 간	중 량 폭	이 행 방 법
현행시장접근(CMA)	1986~88 평균 수입량	1995~2004	기존수입량 유지 혹은 확대	과거의 실제 수입량 보장
최소시장접근(MMA)	1986~88 평균 소비량	1995~2004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저세율에 의한 관세할당 방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 1.

2) 정부보조금의 협상타결 내용

(1) 수출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 농산물협정이 한국의 농산물수출에 입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농산물 수출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곡물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해서 잉여농산물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은 신선도의 유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근접지역으로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다.

수출보조금의 감축문제 또한 UR농산물협상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보조는 1986~9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1995~2000년의 이행기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를 년도별로 감축하고, 물량기준으로 21%를 년도별로 감축한다(<표2> 참조). 단,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이행기간은 1995~2004년인 10년간이며, 재정지출기준으로 24%, 물량기준으로 14%를 년도별로 감축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정책중 수출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축대상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감축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수출보조금 감축

구 분	일 반 원 칙(선진국)	개 도 국 우 대
기준년도	1986~1990년 5개년 평균	1986~1990 5개년 평균
감축목표	금액 : 36%, 물량 : 21%	금액 : 24%, 물량 : 14%
감축이행기간	6년간(1995~2000)	10년간(1995~2004)
감축방법	연도별 균등감축	연도별 균등감축

4 亞熱帶農業研究

(2) 국내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농산물협상 타결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번째 영향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다.

두번째 영향은 각종 농축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의 내수시장으로의

유입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협정에서는 국내보조와 관련한 정책을 일정기준에 따라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정책은 정부수매 등 시장가격 지지와 감축대상 직접지불, 기타 감축대상 보조로 나누어진다.

현재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표 3> UR 농업협정에서의 국내보조정책의 분류

감축대상정책		I. 시장가격지지 II. 감축대상 직접지불 III. 기타 감축대상 보조
허용대상정책	정부서비스	I. 일반 서비스 : 연구 방제, 방역 등 병해충예방 교육 및 훈련 지도, 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II. 국내 식량구호 III.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허용대상 직접지불	I. 생산 증립적 소득지지 II.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화시책 III. 재해복구 및 구호 IV. 은퇴 및 탈농지원 V. 휴정보상 VI.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VII. 환경보존 관련 지원 VIII. 낙후지역개발 지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12.

농산물에 지원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은 1조 7,186억 원이다(<표4>참조). 이 감축대상 보조금은 10년에 걸쳐 13.3%만큼 줄여 2004년에는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허용대상정책은 일반서비스 등 정부

<표 4> 품목별 감축대상보조금 현황

구분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합계
보조액	15,684	523	729	226	24	17,186
총생산액대비비중	24.8%	17.4%	34.1%	79.9%	53.3%	

자료 : 경제기획원, 대의협력위원회 보도자료,

1994. 2. 15

서비스(Government Service Program, GSP)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s to Producers, DP)로 나뉘어 진다. 허용대상으로 분류된 정책들이 갖추어야 할 두가지 일반적 기준은 1) 소비자로부터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이어야 하고,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사업, 병해충방제, 교육훈련, 하부구조의 개선, 영세민에 대한 식량지원 등이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는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의 보장, 재해구호, 탈농보상, 휴경지원 등이다. 다시말하면, 일정 기준하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직접지불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증곡가제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도 허용대상정책이 아니므로 감축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농산물시장 개방의 주요내용

UR농산물협정에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며, 수산물은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상품목은 1,305개이며 이 중 1,067개 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38개 품목만이 UR협상결과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대상품목이다.

NTC 15개 품목의 개방과 관련하여 우선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가 농산물 협정문의 부속서에 반영되었다. 이것에 의하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그 물량은 1995년에 1%(39만석)를 시작으로 1999년에 2%까지 매년 0.25%씩 증량시키고, 2000년도 부터 2004년까지는 2%에서 4%(158만석)로 매년 0.5%씩 증량시키게 되어 있다.

쇠고기는 쿼타제에 의해 수입되는데 1994년부터 연간 2만톤씩 쿼타량을 늘려 2000년에는 현재 소비량보다 많은 23만 5천톤을 수입해야 한다. 또한 2001년 부터는 41.2%의 관세율로 수입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 수입시 징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납입되는 부과금(Mark-up)은 2000년에는 완전 철폐되도록 그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되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997년 7월부터 각각 33.4%, 30.5%의 관세율로 수입개방되고 있다. 유제품 중 치즈, 조제분유 및 유장분말은 1995년부터 개방되고, 버터류와 기타 유제품은 1997년 7월부터 관세하에 수입하도록 되었다.

제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선오렌지는 1997년 6월까지의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고, 1997년 7월이후는 완전 개방된다. 특히 신선오렌지는 1997년 이후에도 쿼타량을 매년 12.5%씩 증가시키도록 되었다.

보리, 대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은 1988~1990년의 관세상당치를 기준으로 10% 감축해 양허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관심품목이 아닌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아직 양허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NTC 15개 품목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한 주요내용은 <표5>와 같다.

〈표 5〉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이행계획서 내용

구 분	관세양허 (%)		최소시장접근 약속물량(톤) 및 관세율		
	기준세율	양허세율	초기연도	최종연도	이행기간
쌀			51,307 (5%) 102,614 (5%)	102,614 (5%) 205,228 (5%)	1995 ~ 1999 2000 ~ 2004
보 리 (쌀보리)	333 (또는 401원/kg)	299.7 (또는 956원/kg)	14,150 (20%)	23,582 (20%)	1995 ~ 2004
대 두	541 (또는 1,062원/kg)	487 (또는 956원/kg)	1,032,152 (5%)	1,032,152 (5%)	" "
옥수수 (사료용)	365	328	6,102,100 (3%)	6,102,100 (1.8%)	" "
감 자	338 (또는 348원/kg)	304 (또는 346원/kg)	11,286 (30%)	18,810 (30%)	" "
고 구 마	428 (또는 375원/kg)	385 (또는 338원/kg)	11,121 (20%)	18,535 (20%)	" "
쇠 고 기	44.5	40	123,000 (43.6%)	225,000 (41.6%)	1995 ~ 2000
돼지고기 (냉 동)	37	25	21,930 (25%)	18,275 (25%)	1995 ~ 1997.6
닭 고 기	35	20	7,700 (20%)	6,500 (20%)	" "
유 제 품 (탈지분유)	220	176	621 (20%)	1,034 (20%)	1995 ~ 2004
고 추	300 (또는 6,900원/kg)	270 (또는 6,210원/kg)	4,311 (50%)	7,185 (20%)	" "
마 늘	400 (또는 2,000원/kg)	326 (또는 1,800원/kg)	8,680 (50%)	14,467 (50%)	" "
양 파	150 (또는 200원/kg)	135 (또는 180원/kg)	12,369 (50%)	20,645 (50%)	" "
오 렌 지	99 (또는 1,015원/kg)	50 (또는 513원/kg)	15,000 (50%)	57,017 (50%)	" "
참 개	700 (또는 7,400원/kg)	630 (또는 6,660원/kg)	6,731 (40%)	6,731 (40%)	" "

자료 : 경제기획원, 국별 이행계획서 의결, 1994. 2. 15

III. UR 농산물협상의 파급효과

국내시장에서 UR농산물협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와 최소시장접근의 보장, 관세 및 관세 상당액의 감소이다(한국경제신문사, 1994).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국내보조정책에 의해 자국농업을 보호해온 반면에 한국의 농업보호는 선진국의 보조정책에 비해 손쉽고 비용이 들지않는 수입제한조치등 국경조치에 더욱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로 인한 타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각종특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없었다(<표6> 참조). 그러나 UR에 의한 최소시장의 접근보장차원에서 3~5%까지 허용해야 한다.

관세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약속 측면에서는 수입농산물의 CIF가격과 국산품의 가격차이를 이루는 관세를 포함한 관세상당액을 품목별로는 최저 15%, 단순평균으로는 36%를 1995~2000년(6년간)까지 감축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발대상국 적용을 받게 되어서 1995~2004년(10년간)의 이행기간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0%, 전체 평균으로는 24%를 감축시키게 되었다.

<표 6>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농산물

관 련 법 규	주 요 품 목
양곡관리법	쌀, 보리, 대두, 팥, 녹두, 맥주맥, 메밀, 귀리, 조, 수수
사료관리법	고구마, 감자, 옥수수, 전분류
주요 농작물종자법	땅콩, 참깨유박, 골분, 단미사료 등 71개 품목
종묘관리법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귤나무, 채소종자
잠업법	잠종, 뽕나무
축산물법	종우(3), 종돈, 종계(2), 조란, 소정액, 동물의 정액, 동물의 수정란
인삼사업법	인삼(14), 인삼잎과 줄기, 인삼종자, 인삼차, 인삼 조제품(기타)
담배사업법	연초종자, 잎담배(8), 잎담배 부산물(3)
수산업법	어류(6), 연체동물(2), 기타 수생동물, 미역, 툇, 기타 해조류

주: ()안의 숫자는 해당 법률하 수입제한품목 수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또한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1. 농산물자급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러한 시장접근의 보장과 관세상당액의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국내시장에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경쟁은 치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무역수지적자는 확대될 것이며,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옥수수, 콩, 쇠고기, 참깨 등 현재의 수입량 비중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1992년에 10개 주요 품목별 자급률은 83~104% 수준에 있는데 수입개방으로 인해 2000년에 41~99%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자급률의 하락이 특

8 亞熱帶農業研究

별하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쇠고기, 감귤이며, 닭고기와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96~99%의 자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7〉 참조).

〈표 7〉 수입자유화에 따른 자급률 하락

품목	연도	1992	1995	2001
쌀		97.5	98.9	97.1
보리		83.3	81.1	72.1
맥주맥		65.8	62.3	41.6
옥수수		1.5	1.7	1.2
콩		12.2	9.0	2.7
감자		96.2	83.4	69.5
고구마		95.7	49.5	40.5
쇠고기		43.9	47.3	24.3
돼지고기		102.8	97.3	93.1
닭고기		100.0	96.7	98.7
감귤		100.7	98.0	85.0
고추		100.0	97.4	96.0
마늘		103.7	98.3	97.9
양파		102.9	98.2	97.9
참깨		47.7	34.7	11.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2. 농산물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유입은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의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소비자에게는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생산기반의 무력화로 이어져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해외농산물에 시장가격변동이 국내시장의 가격에 직접영향을 주게 되어 국내시장에서 가격회복능력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수입개방 첫해인 1995년에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하락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쇠고기의 가격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5~2001년 기간중에 개방폭이 큰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개방폭이 작은 쌀과 관세상당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닭고기 및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표8〉 참조).

〈표 8〉 수입자유화에 따른 가격변화 예측(1990년 불변가격)

품목	연도	1992	1995	2001
쌀(원/80kg)		86.400	84.900	86.800
보리(원/76.5kg)		55.300	31.600	30.100
맥주맥(원/40kg)		21.000	20.400	19.400
옥수수(원/40kg)		18.000	14.300	13.600
콩(원/kg)		1.010	880	840
감자(원/3.75kg)		1.470	1.320	1.280
고구마(원/3.75kg)		940	810	770
쇠고기(원/kg)		11,200	9,900	6,600
돼지고기(원/kg)		3,900	3,700	3,100
닭고기(원/kg)		1,940	1,850	1,900
감귤(원/15kg)		7,000	8,200	5,400
고추(원/600kg)		3,036	1,930	1,770
마늘(원/3kg)		4,151	4,500	5,200
양파(원/kg)		96	170	200
참깨(원/4kg)		23,366	22,600	21,300

주 : 2001년까지의 가격변화 예측은 국제환경과 환율의 변동이 없음을 가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3. 전반적 파급효과

UR농산물 협정 타결로 인한 국내시장 개방이 농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농촌경제 연구원의 연구자료로 살펴보면, 1993년 현재 총 GNP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7.8%인데,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에서 2001년에는 7.9%로 반감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에서 2001년 5.1%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 41.6억 달러이던 것이 2001년에 130.3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농업성장률은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는 1995년에 전년대비 -1.1%의 성장이 예상되고, 1995~2001년 기간중에 연평균 0.1%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9> 참조).

<표 9>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림수산업 총량지표 변화

구 분	1992	1995	2001
농림수산업 비중(%)	7.8	5.5	2.8
농림수산업 취업자(만명)	302.5	268.8	194.8
(비중, %)	(16.0)	(13.1)	(7.9)
농가인구(만명)	570.7	478.7	242.3
(비중, %)	(13.1)	(10.7)	(5.1)
농림수산물 무역적자(억불)	42.6	64.3	130.3
농림수산업 성장률*(%)	1.2	-0.9	0.2
농업 성장률*(%)	1.5	-1.1	0.1

*成長率의 적용년도는 實測值(1992)의 경우 1988~92 평균 증가율이고, 豫測值의 경우 1995년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고, 2001년은 1995~2001 평균 증가율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4. 주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R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개 NTC품목의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1995~2001기간 중 총 7조 8천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가격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방 초기년도 보다 후기로 갈수록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1995년 약 7천3백억 원에서 2001년 약 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UR농산물협상 타결로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의 순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지역별 입지배치가 상이하고, 지역별 농업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UR농산물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의 피해액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예를들어, 감귤의 경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품목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감귤은 기후적 특성상 제주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이 지역에서 농업총조수입 중 감귤 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의 경우 무려 67%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지역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전국단위의 품목별 대책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단위의 별도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표11>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액을 NTC 15개 품목을 중심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볼때 전남지역의 피해가 가

<표 10>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생산자잉여 감소분 예측

단위 : 억원 (1990년 불변가격)

품 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쌀	529	655	779	899	1,018	1,007	1,247	6,129
보리	582	603	632	663	689	711	730	4,610
맥주	315	363	420	483	546	616	690	3,433
옥수수	125	145	168	192	217	241	266	1,354
콩	171	166	157	146	131	113	92	976
감자	347	411	476	546	614	687	762	3,843
고구마	455	430	403	374	348	321	295	2,626
쇠고기	1,732	2,484	2,500	2,926	3,618	3,565	4,256	21,081
돼지고기	1,092	1,384	1,671	3,611	3,537	3,435	3,306	18,036
닭고기	226	309	393	0	0	66	138	1,132
감귤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
고추	199	263	256	299	294	350	356	2,017
마늘	609	159	592	500	601	424	631	3,516
양파	47	29	42	41	46	49	53	307
참깨	162	157	149	138	125	109	89	929
계	1,337	8,128	10,436	11,484	13,530	12,264	14,759	77,938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표 11> 생산자 잉여감소로 인한 시·도별 피해액 - 1995년 예측액 (1990년 불변 가격)

순위	지역(도)	지역피해액(단위 : 억원)	순위	지역(도)	농가당피해액(단위 : 만원)
1	전남	1,387.6	1	제주	249.7
2	제주	1,002.3	2	강원	49.1
3	경남	990.3	3	전남	46.6
4	경북	986.9	4	경남	41.6
5	경기	816.4	5	경기	40.3
6	충남	738.5	6	인천	33.6
7	강원	494.7	7	충남	32.8
8	전북	483.9	8	경북	32.1
9	충북	333.2	9	충북	28.8
10	광주	22.6	10	대구	27.7
11	대구	22.8	11	전북	25.7
12	대전	19.1	12	대전	20.5
13	인천	18.4	13	광주	17.1
14	부산	14.0	14	부산	16.5
15	서울	2.4	15	서울	6.9
합계		7,337			
평균		489.1			41.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의 순이다. 그러나 1995년에 농가당 피해액은 제주지역이 1990년 불변가격으로 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전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2>는 품목별로 피해가 높은 상위 5개 시·군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 생산이 감골은 제주지역, 맥주맥은 제주와 전남, 양파는 전남, 옥수수는 강원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5개 시군에 이들 지역

<표 12> 품목별 피해액 상위5개 지역

순위 / 품목	쌀	보리	맥주맥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쇠고기
1	김제	밀양	북제주	황성	북제주	평창군	해남군	공주군
2	당진	해남	해남	정선	무안군	명주군	여천군	안성군
3	화성	보성	고흥	홍천	신안군	남제주	북제주	홍성군
4	익산	경주군	남제주	영월	남제주	홍천군	남제주	합천
5	해남	합평	여천	평창	고흥군	정선군	완도	당진군
순위 / 품목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전체
1	용인군	포천군	남제주	안동군	무안군	무안군	안동군	남제주
2	홍성군	용인군	서귀포시	의성군	남해군	창녕군	북제주	북제주
3	당진군	화성군	북제주	청송군	해남군	영천군	예천군	서귀포
4	포천군	이천	제주시	영양군	신안군	합평군	해남군	해남군
5	김해군	김포군	통영군	정읍군	의성군	북제주	의성군	무안군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수입개방이 특정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품목별 피해액이 가장 큰 시·군은 제주도가 3개 시·군(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이고, 전남(해남군, 무안군)이 2개 군이다.

결론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 대책은 전국단위의 품목별 대책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접근할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국 단위에서 품목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별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IV. 농산물 시장개방이 제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

UR협상 타결로 95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의 전면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UR에 따른 제주지역 농산물의 품목별 피해를 파악하고 품목별 피해를 파악하고 품목별로 효율성 있는 농업경영체를 다양하게 육성, 지원함으로써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을 위주로 자세한 수입개방 내용과 피해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오렌지 및 감귤류

1) UR협상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산 감귤에 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은 오렌지와 오렌지쥬스이다. 이들 품목은 '97년 7월부터 높은 관세를 물리지만 수입은 자유화 된다.

오렌지는 '95년 1월 부터 '97년 6월까지 현재 관세율인 50%의 관세를 물려서 '95년에 정해진 수입쿼타량 한도 내에서 수입하기로 했다(<표13> 참조). 1998~2004년까지 쿼타량 증가율은 年間 12.5%이다.

그러나 '97년 7월 부터는 자유화가 되면서 수입쿼타량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 단, 자유화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98년의 경우 '97년 수입하기로 한 쿼타량 2만5천톤의 12.5%인 3천1백25톤을 추가해 모두 2만8천1백25톤을 50%의 관세율로 수

입하고, 쿼타량 이상의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대략 84%의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이후 쿼타량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을 기준으로 99퍼센트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2004년까지 관세율을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생산자 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입권을 갖는 무역)을 통해 수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다.

만다린등 기타 감귤류의 수입개방 내용을 보면 쿼타량에 의해서 '95년 1,258톤을 시작으로 2004년에 2,097톤을 수입해야 한다. 쿼타량에 대한 관세율은 50%이다. 쿼타 초과량은 '95년기준 16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04년까지 144%가 되도록 매년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오렌지쥬스는 '95년에 5만톤, '96년

<표 13>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 내용

구 분	쿼 타 량 (톤)			쿼타량 관세(%)	초과관세(%)	
	'95	'97	2004	'95.1~'97.6	'95	2004
오렌지	15,000	25,000	57,017	50	99	50
감귤류	1,258	1,444	2,097	50	160	144
오렌지쥬스	50,000	30,000*		50		

* '97년 6월말까지 쿼타량이고, '97년 7월이후는 완전히 개방된다.

에 5만5천톤, 그리고 '97년 1월~6월까지 3만톤의 쿼타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7년 7월이후 부터는 60퍼센트의 관세율로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 된다. 그런데 국내산 감귤쥬스의 생산원가는 미국 및 브라질 산 오렌지 쥬스의 국내수입가격에 비

해 두배이상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오렌지쥬스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부터 쥬스 생산용 농축액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오렌지, 감귤, 오렌지쥬스가 수입자유화 되면 우리의 감귤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97년 6월 수입자유화 이전까지는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시기를 국내산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 수입이 자유화 되면 아무리 관세가 높다해도 바나나 수입개방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물량이 초기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차츰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 제주 감귤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감귤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

해액은 1995년 746억원에서 2001년 1,853억원으로 증가한다. 1995 - 2001년 7개년간 총 피해액은 7,949억원으로서 단일 지역에서 입는 피해액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수입개방 초기년도인 '95년에 오렌지 수입물량은 1만 5천톤에 불과하지만, 2001년에는 그 13배 이상이나 되는 20만 1천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량으로 제주 감귤의 자급률은 '95년의 98%에서 2001년에 74%로 급격히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감 자

1) UR협상결과

신선감자는 1988~90년도의 국내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95년도는 3%에 해당하는

<표 14> 감귤의 개방피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량(천톤)	564	628	592	639	574	615	552
소비량(천톤)							
생과용	471	538	574	601	627	655	683
가공용	103	103	76	69	59	63	65
수출량(천톤)	5	6	6	6	6	6	6
수입량(천톤)	15	20	64	38	118	110	201
자급률(%)	98	98	91	95	84	86	74
생산자잉여감소액(억원)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 12.

11,286톤을 수입 허용하고, 2004년에는 5%에 해당하는 18,810톤을 수입자유화 하도록 협상이 타결 되었다. 그리고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쿼타량에 한해서 현행관세인 30%로 수입이 허용되고, 초과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국내외 가격차만

큼의 높은 관세율인 338%를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4%씩 감축하여 2004년도에는 30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생감자는 부피가 크고 부패의 염려가 있어 운반수송상의 문제점이 많아 신선감자 상태로의 국제무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미국, 네델란드 등 주요수출 예상국들의 경우 암종병, 황화 위축병, 씨스트선종 등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 농촌진흥원, 1994. 6).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 쿼타량만큼을 수입해야 할 때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으로 수입창구를 제한하고, 수입시기로 농가의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감자의 경우 수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국내 감자 생산농가의 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재 재배수준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감귤의 경우는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지만 감자는 전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제주지역만의 피해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전국적인 비중을 1988년에서 1992년까지 5년동안 구한후 이것들의 평균비중을 계산하였다. 5년간 제주지역 감자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의 평균 비율만큼 제주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피해를 계산하였다.

예를들어, 5년간 제주지역 감자생산이 전국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율들의 평균은 10.3%이다. 따라서 전국 감자 생산 농가가 입을 피해의 10.3%가 제주도의 몫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물론 전국적인 피해액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액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15> 감자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 잉여감소(억원)	35.7	42.3	49	56.2	63.2	70.8	78.5

* 피해액 계산시 1988~1991년 4년간의 평균비율을 사용함.

왜냐하면 1992년의 비율이 다른해에 비해서 워낙 높아서 평균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1992년은 제외시킴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35억 7천만 원이고, 2001년에는 78억 5천만 원으로 예측된다. 1995~2001년 7개년 동안의 총피해액은 395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3. 고구마

1) UR협상결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용도는 생식용, 전분용, 주정용으로 나뉘어 진다. 총 농가의 23% 가량이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산지는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이중 제주는 전분용 고구마 생산으로 특화되어 있다.

생고구마는 현재까지 수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자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양

을 수입하기로 했다. 우선 '95년 부터 최소 시장접근에 의해 1988~90년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의 3%인 11,121톤을 수입하고, 2004년에는 국내평균소비량의 5%인 18,535톤을 수입자유화 하게 되었다. 또한 관세부과는 쿼타량에 대해 현행관세율인 30%를 부과하지만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증가세로 428%를 부과하고, 2004년도에 가서는 10%가 감축된 38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

다.

2) 개방의 파급영향

제주지방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피해액도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피해액을 살펴보면 '95년에 제주지역 고구마 생산농가가 입을 피해는 약 79억 6천만 원이고, 2001년에는 51억 6천만 원이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피해액은 459억 5천만 원이다.

<표 16> 고구마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 잉여감소(억원)	79.6	75.2	70.5	65.4	61	56.2	51.6

4. 쇠고기

1) UR협상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쇠고기는 2000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쿼타에 의한 수입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수입쿼타는 매년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는 현재의 20%에서 43.6%로 2배이상 높게 물릴 수 있게 하였으나, 2004년까지 40%로 감축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2001년이후는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하기로 하였다. 또한 쇠고기 수입때 관세와는 별도로 내도록 한 부과금(Mark-up)을 차츰 줄여 2000년에는 없애기로 합의 했다.

이러한 협상 결과로 부터 앞으로 쇠고기 수입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한편 관세 및 부과금등으로 우리 쇠고기 가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의 가격도 점차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한우 쇠고기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이 자유화되는 2001년에는 41.2%의 관세만을 부과하여 수입이 자유화되므로, 그때의 수입 쇠고기의 국내 도매시장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쇠고기 생산비가 국제가격의 3배 수준임을 고려할때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생산비를 대폭 절

<표 17>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과 수입조건

항 목 \ 년 도	1993	1995	1997	2000	2001	2004
수 입 량	99천톤	123천톤	167천톤	225천톤	-	-
관 세	20%	43.6%	42.8%	41.6%	41.2%	40%
부과금상한선	100%	70%	40%	0	0	0

감해야만 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맛과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UR타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쇠고기이다. 제주지역에서 축산농가가 입을 피해 역시 감자의 경우처럼 1988~92년 5개년간 평균비율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개방초기연도인 '95년도에 수입물량의 증가로 인해 쇠고기 가격은 현재보다 약간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는 38억 1천만 원으로 예측된다(〈표18〉 참조).

수입이 자유화되는 2001년 부터는 외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우울의 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이다. 2001년에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는 93억 6천만 원이다. 1995~2001년 7개년간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총 463억 7

〈표 18〉 쇠고기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 잉여감소(억원)	38.1	54.6	55	64.4	79.6	78.4	93.6

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5. 돼지고기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돼지고기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과 같이 25%의 양허관세로 쿼타 물량을 수입하게 되었다. 수입쿼타는 정육기준으로 '95년 17,544톤, '96년 23,392톤, '97년 6월 30일까지 14,620톤이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에는 현행 25%의 관세율은 33.4%로 인상하면서 수입을 자유화 하게 되며, 인상된 관세율은 2004년까지 25%로 감축시켜야 한다.

'97년 6월까지의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농가의 피해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내 양돈농가의 불안심리요인 등으로 양돈산업의 위축 및 영세농가의 탈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에는 수입이 자유화 되므로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지 않으면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감자 등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개방피해는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되었다.

〈표 19〉 돼지고기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25.1	31.8	38.4	83	81.3	79	76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쇠고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돼지고기 생산자잉여 감소액이 쇠고기 생산자잉여 감소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쇠고기 생산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대규모 양돈농가나 양돈단지에 비해 생산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 초기연도에 제주지역의 피해액은 25억 1천만 원이고, 2001년에는 76억 원으로 예측된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피해액은 414억 6천만 원이다.

6. 닭고기

1) UR협상 결과

UR 협상결과 냉동 닭고기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현행 20퍼센트로 되어 있는 관세율로 정해진 킬로그램 한도내에서 수입하도록 되었다. 즉 수입킬로그램은 '95년 7,700톤, '96년 10,400톤, '97년 6월까지 6,500톤이다. 그러나 '97년 7월부터는 관

세율을 30.5퍼센트로 인상한후 자유화하여 2004년까지 20%로 감축하게 되었다

닭고기 또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97년 6월 30일까지는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화 이후에 수입 닭고기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양계농가는 고품질, 저생산비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때 국내 닭고기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닭고기 수입개방의 피해는 생산비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양계농가에 집중될 것이다. 개방초기연도인 '95년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2억 3천만 원이고, 2001년에는 1억 4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 7개년간 총 11억 5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피해액은 양파, 참깨, 콩 등과 함께 금액면에서 단순 비교할 때 타 품목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표 20> 닭고기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2.3	3.1	4	0	0	0.7	1.4

7. 마늘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마늘은 '95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총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현재의 50% 관세율로 수입하고, 2004년에는 킬로그램을 국내소비량의 5%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킬로그램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높은 관세율 부과하기로 하였다. 즉, 관세기준은 '95년에 400%(또는 2,000원/kg)이고, 2004년에는 360%(또는 1,800원/kg)로 줄이도록 합의 하였다.

수입개방이 될 경우 중국산이 수입될 것

으로 예상되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쿼타량 이외의 수입물량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2) 개방의 파급영향

세계의 주요 마늘 생산국은 한국, 중국, 인도, 태국, 스페인이며, 이들 국가에서 세

계생산량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마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에서 10.2%, 생산량에서 1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개방시 예상되는 수입국은 중국이며, 기후, 수송거리, 인건비 등을 고려할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다.

<표 21> 마늘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21	5.5	20.6	17.4	20.9	14.7	21.9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간 총 122억 원으로 예측되었다. 개방초기연도인 1995년에 마늘 생산능가가 입을 피해액은 21억 원이고, 2001년에는 21억 9천만 원이다.

8. 양 파

1) UR협상결과

UR 협상결과 양과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95년부터 현재의 50% 관세율로 국내 총소비량의 3%를 수입하고, 10년동안 차츰 늘려서 2004년에는 총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물

량을 쿼타로 수입해야 한다. '95년의 쿼타량은 12,369톤이고, 2004년은 20,645톤이다. 그러나 쿼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의 가격차 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 했다.

양과는 중국, 대만, 뉴질랜드, 네델란드, 호주 등으로 부터 신선상태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쿼타량 이상의 수입은 국내가 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 그러나 쿼타량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양파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양파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1.9	1.2	1.7	1.6	1.8	2	2.1

2) 개방의 파급영향

개방 초기연도인 1995년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억 9천만 원이고, 2001년에는 2억 1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간 총 12억 3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 양과의 시장

개방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NTC 품목과 비교할때 제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파의 자급률이 현재 100%의 완전 자급수준이고, 쿼타량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 150%의 고관세율을 부과하므로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MA물량이 현행 50%의 관세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양파의 경우 저장성이 약하고, 저온저장시설의 저장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양파의 경우 국내산 양파에 비해 신선도 등 품질 면에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MMA물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맥주맥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맥주맥은 1995~2004년의 10년간 CMA를 허용하고, TE의 10%이상을 매년 감축하도록 되었다. 키타량은 '95년에 3만톤, 2004년에 3만톤으로 합의 되었다. 키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570%, 2004년도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맥주맥은 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농가생산량을 모두 수매한 후 부족되는 물량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것이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국내산 맥주맥 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맥주회사측은 수입맥주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등으로 부터 점차 맥주맥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저하되고 있다.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이행 초기연도인 1995년에 43억 7천만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이행 7년후인 2001년에 95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제주지역 맥주맥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1995~2001년간 총 477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23> 맥주맥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43.7	50.4	58.4	67.1	75.9	85.6	95.9

10. 콩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콩은 1995~2004년의 10년간 CMA를 허용하고, TE의 10%이상을 매년 감축하도록 타결되었다. 초기년도인 '95년도에 5%의 관세로 1,032,152톤을 그리고 최종년도인 2004년도에 동일한 물량과 관세로 시장을 접근하도록 합의 되었다. 그러나 시장접근 약속물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541%의 관세를 그리고 2004년도

에는 487%로 점차 줄여 나가도록 되었다.

콩은 현재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개방이 될경우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여 생산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콩 시장은 현재로 자급률이 12.2%로 낮지만, 개방초기연도인 1995년에 9%, 이행기간 7년차인 2001년에는 2.9%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예

<표 24> 콩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10.9	10.6	10	9.3	8.4	7.2	5.9

상되는데 이행 초기연도인 1995년의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10억 9천만 원으로 예측되었고, 이행기간 7년차인 2001년에는 5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 간 총 62억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1. 참깨

1) UR협상결과

UR에서 참깨의 개방조건은 양념류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가격차 수준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자유화하는 것이다. 수입 킬타로 MMA물량을 1995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6,731톤으로 하고, 관세율을 현행수준인 40%로 하기로 하였다.

킬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 초기연도의

관세율은 700%이고, 2004년까지 670%로 감축하도록 되었다. 단, 종량세로 할 경우 '95년도에 Kg당 7,400원으로 하고, 2004년도까지 Kg당 6,700원까지 감축시키도록 되었다. 국내산 참깨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1986~91년 6개년간 평균가격의 약 12배 정도로, 시장개방이후 외국산과는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참깨의 자급률은 1995년의 34.7%에서 2001년의 11.6%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1995~2001년 7개년간 제주지역 참깨 생산농가가 입을 총 피해액은 41억 8천만 원으로 계측된다. 특히 개방 초기연도인 1995년에 피해액은 7억 3천만 원으로 가장 크고, 2001년에 피해액은 4억 원으로 하락할 것이 예측된다.

<표 25> 참깨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 감소(억원)	7.3	7.1	6.7	6.2	5.6	4.9	4

12. 제주지역 농축산물의 품목·연도별 개방피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의 11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1995~2001년 7개년간 총

1조 409억 4천만 원으로 예측되었다(<표26> 참조). 생산자잉여 감소폭이 정규적으로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감귤의 해절이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해절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표11>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시·도별 피해액을 보여 주었다. 이 표에서 1995년 제주도의 개방피해는 1002억 3천만원이었다. 이 피해액은 5년간의 평균비율을 이용하여 예측한 피해액 1011억 6천만원과 근접하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계산한 피해액이 예측방법상의 특성 때문에 파급영향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표 26> 품목·연도별 개방피해

생산자잉여감소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計
오렌지 및 감귤류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
감자	35.7	42.3	49	56.2	63.2	70.8	78.5	395.7
고구마	79.6	75.2	70.5	65.4	61	56.2	51.6	459.5
쇠고기	38.1	54.6	55	64.4	79.6	78.4	93.6	463.7
돼지고기	25.1	31.8	38.4	83	81.3	79	76	414.6
닭고기	2.3	3.1	4	0	0	0.7	1.4	11.5
마늘	21	5.5	20.6	17.4	20.9	14.7	21.9	122
양파	1.9	1.2	1.7	1.6	1.8	2	2.1	12.3
맥주 맥	43.7	50.4	58.4	67.1	75.9	85.6	95.9	477
콩	10.9	10.6	10	9.3	8.4	7.2	5.9	62.3
참깨	7.3	7.1	6.7	6.2	5.6	4.9	4	41.8
계	1,011.6	851.8	2,112.3	1,036.6	2,143.7	969.5	2,283.9	10,409.4

V. 결 론

지금까지 UR 농산물 협상타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개방이 될 경우 1995~2001년 기간중 제주도 농가가 입을 피해액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개방이 될 경우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감귤, 쇠고기, 고구마, 돼지고기, 감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액을 살펴 보면 감귤 7,949억 원, 쇠고기 464억 원, 고구마 460억 원, 돼지고기 415억 원, 감자 396억 원 등이다.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품목이

수입개방이 될 경우 제주농가가 입을 총 피해액은 1조 409억 원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농가당 피해액은 제주지역이 약 250만 원으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강원도 49만 원, 전남 47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개방으로인한 제주농가의 피해액은 2위인 강원도에 비해 무려 다섯배이다.

이렇게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제주도가 입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보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각 부문의 이해당사자간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

치·사회 등 각 부문이 선진화 되고 도민의 사고와 관행까지 세계화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대외협력위원회 보도자료, 1994. 2. 15.
- 경제기획원, 국별 이행 계획서의결, 1994. 2. 15.
- 김경택, 고남육, 국제화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경제연구총서1집, 1994.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해설, 1994.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 방향, 1994.